

사업주 훈련지원규정 개정



최영호

인적자원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1. 배경

직업훈련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그간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동 제도를 정부 주도적인 형태로부터 수요자 주도적·노동시장 중심적인 형태로 개편하여 왔다. 그런데 수요자 주도적인 훈련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노동시장 정보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산업체가 직업 훈련에 대하여 보다 많은 참여와 보다 큰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훈련시장의 발전이 취약한 우리 나라의 조건 하에서 기업의 훈련 참가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있다.

2000년 2월 25일에 고시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0-6호)은 사업주 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수준을 인상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개정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2. 개정내용

가. 지원대상의 확대

우선 사업주 훈련에 대한 비용지

원의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

첫째,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소지하고 있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회사 사업주로부터 건설근로자 확인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제2조 제11호, 제10조). 이것은 노동이동이 활발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더라도 그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신설한 것이다.

둘째, 고용보험법상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채용예정자의 범위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서부터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고용보험법 제27조), 채용 예정자의 정의규정을 정비하였다(제2조 제3호). 이것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의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도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훈련수당의 신설

사업주가 구직자·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 전액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4조 제4항·제5항).

이것은 사업주가 구직자·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비용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양성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구직자(실업자) 훈련의 경우 학원 등 사업주 외의 자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수당이 지원되는 점과 균형을 이룸으로써 실업자의 사업주 훈련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실업자 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 훈련지원비의 인상

훈련직종별 시간당 단가의 인상, 지원금 지원율의 상향 조정, 기숙사비의 현실화 등으로 훈련지원비를 인상하였다.

첫째, 훈련직종별 훈련비 시간당 단가의 차이를 상향조정하였다(동 규정 [별표1] 참조). 그리고 훈련직종별 훈련비 시간당 단가의 최저 단가와 최고 단가의 차이를 151%에서 182%로 상향조정하였다.

둘째,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 우선 사업주

가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용을 인정받는 훈련시간 제한을 폐지하여 실훈련시간 만큼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의 지원기준을 고시단가에서 지정훈련비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종전에는 시간당 훈련비가 고시단가를 넘어설 수 없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지정훈련비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고시단가를 넘어서는 비용 인정을 허용하였다. 한편, 기준외훈련의 경우 자체훈련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율을 종전의 90-60%(대규모 기업은 70-40%)에서부터 90%(80%)로 상향 조정하고, 위탁훈련에 대하여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율을 10% 인상하였다. 이들 개정은 기준훈련에 대하여 실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외훈련에서와 같이 고급장비를 사용하거나 고급기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율을 인상하여 자회사나 협력업체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주 훈련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원수준의 적정 및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훈련지원금은 고시단가에 실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기업에 대한 통신훈련비 지원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제6조), 중소기업 현장산업기술인 등 기술·기능장려를 위한 특례자에 대한 기준외훈련 지원비율을 대규모 기업의 경우 70%에서 80%로 10% 인상하였다(제9조 제3항).

셋째, 기숙사비를 현실화하였다(제4조 제6항). 기숙사비의 1일 한도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1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월 175,000원을 한도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이 없는 공휴일에 사용된 기숙사비도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수강장려금 지원범위의 확대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차기 수강개시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업을 사유로 하여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수강장려금에 대한 불합리한 지급 제한 사유를 폐지함으로써 수강장려금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마. 지원규정의 정비

사업주 자체훈련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현장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기준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사업주 훈련지원제도를 정비하였다.

첫째, 사후정산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제2조 제10호). 사업주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가 훈련시장 가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훈련비(지정훈련비) 기준의 비용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다른 한편으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정산절차상의 행정업무 부담을 감안하여 고시된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후정산 하도록 하였다.

둘째, 현장훈련 지원규정을 정비하였다(제5

조). 현장훈련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1월 이상 집체훈련방법으로 양성훈련을 이수한 자’ 일 것을 명시하여 종전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집체훈련 이수자, 취업 후 1개월 미만인 자”를 “채용 예정자”로 개정하였다. 또한 집체훈련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실비용항목을 인정하고 있었던 비용인정 기준을 집체형식의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주가 지급한 훈련수당으로 간소화하였다. 현장훈련의 경우, 집체훈련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체화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장훈련과정 중 훈련생의 생산기여분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공제한 ‘훈련순비용’을 보전하면서 훈련비 정산과정에서의 행정부담을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훈련수당과 집체형식의 훈련비용만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3. 결 어

새로 고시된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훈련수당과 현장훈련 관련 사항은 2000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사업주의 훈련참여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수요자 주도적 훈련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사업주의 훈련참여를 자체가 높아져야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사업주 훈련의 체계화(숙련형성구조의 체계화) 내지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제도를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